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0 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1. 1.

(주) 딘지그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4 조의 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 년 2 월 10 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20년 12월말기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식회사 판지그룹
대표자	김어준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판지일보 / 약 14만명 판지마켓 / 약 4천명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120억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운영팀 손서희 팀장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 2018년부터 성인콘텐츠 관련 업계 종사자 출신을 성인콘텐츠 전담직원으로 고용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
- 성인콘텐츠는 성인게시판에만 게시 가능하며 해당 게시판은 통신사의 성인인증을 받은 사람만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
- 성인게시판의 게시글은 회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이 직접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인 후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 (근거: <https://www.ddanzi.com/pervertclub/641633284>)

[공지] 판지 운영팀입니다. 사전승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2020-09-03 15:21

음변당관리자 조회 3176 추천 22 비추천 -124

1. 불법촬영물
불법촬영 영상물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절대 금지되는 게시물입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 영상물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나는 것이나입니다.

굳이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자고 결정한 이유는 운영진도, 글 작성자도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 된 영상이라는 것을 모른채 일반유저들에게 공개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일본의 사례가 아닌 한국의 사례였으면 문제는 심각했을 것이며 만약 앞으로 이러한 게시물이 올라왔
을때 이미 유포가 되어 버린 후에 후조치를 해봤자 본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판단하에 사전승인 방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자가 배포를 금지하는 콘텐츠

음변당에 올라오는 일부 일반인 모델 촬영물 또는 방송 캡처본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혹은 로펌의 삭제요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이 경우 운영진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일반 유저분들은 모르고 업로드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운영진은 이런 사례 역시 완벽
차단함으로써 **얘기치 못한 2차 가해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승인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성인게시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위 인식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공지를 게시
(근거: <https://www.ddanzi.com/ddanziNotice/559398410>)

[필독] 게시판 이미지 수위 및 공유금지 재공지	2019-05-11 07:08
운영수뇌5	조회 1474 추천 9 비추천 0
이미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경찰 소환 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칫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음란변태당 역시 보다 엄격한 규정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비단 불법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제작된 AV등의 성인영상을 역시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상기시켜드리며 현재도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해당 이미지나 음란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의 주소 링크, 사진 파일 정보에 마그넷 주소를 심는 등의 행위가 확인 된 경우 운영진의 임의 삭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근거: <https://www.ddanzi.com/pervertclub/653459529>)

[공지] 일본AV의 유출영상정보는 게재를 금지합니다.	2020-11-23 11:15
음란당관리자	조회 3364 추천 23 비추천 -5
일본 AV의 무수정 유출영상은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한 해킹 및 내부 유출 자르르써 엄연히 불법으로 유출된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들은 대부분의 배우 및 제작사가 피해를 호소하며 유통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 하고 있음으로 게재를 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음란변태당 회원여러분들의 양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체 생산 콘텐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이슈를 다뤄 사이트이용자들이 전반적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근거: <https://www.ddanzi.com/ddanziNews/626274260>)

싸이코다이나믹스 n번방 특집 2 : 소아성애란 무엇인가	2020-06-05 16:00
닥터k	조회 8082 추천 13 비추천 -1
N번방 사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윤리적인 특성이 있다. 먼저 그것은 동의하지 않은 여성을 끌어들이는. 이는 취약한 여성에 대한 강압을 동반한다. 공감능력의 부재는 이런 강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기까지 한다면 이런 과정은 더 가혹해진다. 이런 모든 특징의 극단에는 사이코패스라는 개인이 있었다.	
그러나 N 번방의 비윤리성이 꼭 강압과 잔혹성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COPINE이라는 척도가 있다. 아동의 성적 이미지를 총 5단계의 분류하는 방식이다. 5단계는 아동에 대한 가학적인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다. 이는 의식의 여지없이 비윤리적이다. 1단계는 단지 아동의 벗은 몸이나 에로틱한 포즈만을 포함한 경우다. 성관계에 대한 강압도, 잔혹한 폭력도 없다.	
Wood는 1단계가 비록 가학성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비인간화와 착취를 내포한다고 본다. 사실 아동 착취물의 근본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강압성이나 잔혹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그 자체로 사	

- 전담 고문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어 해당 이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실시 중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2020 년 1 년간 불법촬영물 신고접수 없음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및 처리결과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동시행령 [별지서식] 또는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함
 ※ 대상기간 : '20.12.10. ~ 12.31.(신고접수 기준)

□ '20년 월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현황 및 처리결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 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관·단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유	불법촬영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허위영상물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처리 결과	자체 삭제·접속차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방심위 심의요청	심의삭제·차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각하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삭제·차단 사유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불법촬영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허위영상물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요청사유 및 삭제·차단 사유는 중복계상

4.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관련 규정)

-성인게시판 이용규정

- ① 실존인물의 음부노출사진, 영상은 게시를 금지한다.(모자이크도 포함) 표현물의 경우 그것이 포르노 목적의 제작물 (성인만화, 성인애니, 일러스트 등) 인 경우에도 게시를 금지한다. 음부의 대부분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이미지로 덧 칠 되어 있을 경우에는 허용한다. 위 게시물은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할 수 있으며 1 차 경고, 2 차 1 개월 정지, 3 차 영구정지에 처한다.
- ② 불법촬영물 및 일반인 사진은 얼굴이 노출된 경우, 공익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 삭제한다. 요구가 들어올 시에도 바로 삭제 처리한다.
- ③ 여성의 유두가 노출된 사진, 노골적인 성행위 사진은 19 금 전용 게시판 이용이나 후방주의 체크를 의무로 한다.(자유게시판은 금지한다)_ 일반 게시물로 올라와 있는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게시물 이동이나 후방주의 게시물로 변경할 수 있다. 섹시화보나 수위가 높은 유머자료의 경우는 후방주의 체크를 권장하나 의무로 하진 않는다.

- ④ 성행위를 표현한 글의 경우 비속어나 노골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노골적인 성행위 사진은 19금 전용 게시판 이용이나 후방주의 체크를 의무한다.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대한 절차)

-운영진 관리 지침

- ① 각 시간대의 담당 운영자는 성인게시판 이용규정에 위반되는 게시물이 있으면 임의삭제 등의 빠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불법촬영물 여부 판단이 힘들 경우엔 운영팀장 혹은 성인컨텐츠 담당자에게 확인 후 조치한다.
- ② 이용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게시물이라도 당사자의 삭제요청, 혹은 제 3자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담당자는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빠른 시간 내에 선조치하여 답변한다. 판단이 힘들 경우엔 운영팀장 혹은 성인컨텐츠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 ③ 1항, 2항과 관련된 조치 후엔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게 쪽지 및 메일로 조치 내용을 전달한다. 이용자가 이용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경우에 맞게 징계조치 한다. 또한 조치한 게시글에 대한 백업주소와 게시자의 IP를 기록해놓아야 한다.
- ④ 게시물의 내용이 아직 처벌받지 않은 범죄의 증거로 보이는 게시물일 경우에는 즉각 운영팀장에게 보고하고 담당기관에 신고조치 한다.
- ⑤ 위 내용은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업무종료시 운영팀장에게 보고한다.

(기타 운영관련 사항)

-청소년 보호 담당자 의무 규칙

- ① 청소년 보호 담당자는 불법컨텐츠에 대한 이해와 최근 사고사례,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할 의무가 있다. 이 내용은 운영진 정기미팅 시 마다 시간을 분배하여 운영진 전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 보호 담당자는 사이트 이용 규정 및 게시물에 대한 이슈 발생시 담당기관이나 고문변호사에게 문의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이트 게시물이 범죄사건의 증거로 쓰일 경우 담당자는 담당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④ 3항에 대비하여 삭제한 게시물일 경우라도 최소 3년간 백업자료를 보관하도록 한다.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 분	정	부
성 명	손서희	이상진
부 서	운영팀	운영팀
직 책	팀장	사원
지정일	2020.12.28	2020.12.28

6.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구 분	교육일	교육명	참석자	시간	교육기관
교육실시	2020-04-11	불법촬영물 개념 설명	운영팀 7명	2시간	자체교육
교육실시	2020-10-23	불법촬영물 입건 사례 교육	운영팀 7명	2시간	자체교육
교육실시	2021-01-09	불법촬영물 관련 신설규정 안내	운영팀 7명	2시간	자체교육